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4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한동훈 · 김예지 · 박정하
진종오 · 조경태 · 배현진
정연욱 · 김 건 · 고동진
유용원 · 유의동 · 한기호
김기현 · 윤한홍 · 김용태
엄태영 · 이성권 · 신성범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직전마다 선관위 직원의 휴직자가 급증하였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휴가·휴직 조

정)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명하는 것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시기의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조휴가

2. 출산휴가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제4호의2·제5호에 따른 휴직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시기 변경의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6(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휴가·휴직 조정) ①</u> <u>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명하는 것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시기의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경조휴가</u> <u>2. 출산휴가</u> <u>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제4호의2·제5호에 따른 휴직</u>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
가 또는 휴직 시기 변경의 기
준,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